

## ◎ 통계청 고시 제 2023 -99호

통계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작성의 변경 승인(협의)을 고시합니다.

2023 년 03 월 20일

통 계 청 장

1. 통계의 명칭 : 대구광역시기본통계
2.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: 대구광역시
3. 통계작성승인(협의)번호 [작성승인(협의)일] : 제203002호 [1993.06.14.]
4. 통계작성의 변경 연월일 : 2023.03.17.
5. 통계작성의 변경 내용과 사유 :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	변경사유
작성기준 대상기간 실시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년도 12.31.(단 교육부문은 4.1.)</li> <li>• 전년도 1.1. ~ 12.31.</li> <li>• 1.1. ~ 11.30.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전년도 12.31.(단 교육부문은 전년도4.1.)</li> <li>• 전전년도 1.1. ~ 12.31.</li> <li>• 매년(1.1. ~ 12.31.)</li> </ul>	- 정책관리시스템 메타데이터 현행화
작성항목 (통계표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7개 부문 219개 항목</li> <li>- 연혁 2</li> <li>- 토지 및 기후 5</li> <li>- 인구 19</li> <li>- 노동 5</li> <li>- 사업체 3</li> <li>- 농림수산업 28</li> <li>- 광업·제조업 및 에너지 8</li> <li>- 전기·가스·수도 13</li> <li>- 유통·금융·보험 및 기타서비스 8</li> <li>- 주택·건설 18</li> <li>- 교통·관광 및 정보통신 7</li> <li>- 보건 및 사회복지 33</li> <li>- 환경 10</li> <li>- 교육 및 문화 26</li> <li>- 재정 5</li> <li>- 소득 및 지출 6</li> <li>- 공공행정 및 사법 23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17개 부문 218개 항목(삭제1, 변경104)</li> <li>- 연혁 2</li> <li>- 토지 및 기후 5(변경1)</li> <li>- 인구 19(변경6)</li> <li>- 노동 5(변경1)</li> <li>- 사업체 3</li> <li>- 농림수산업 27(삭제1, 변경14)</li> <li>- 광업·제조업 및 에너지 8(변경4)</li> <li>- 전기·가스·수도 13(변경5)</li> <li>- 유통·금융·보험 및 기타서비스 8(변경5)</li> <li>- 주택·건설 18(변경4)</li> <li>- 교통·관광 및 정보통신 7(변경1)</li> <li>- 보건 및 사회복지 33(변경18)</li> <li>- 환경 10(변경5)</li> <li>- 교육 및 문화 26(변경20)</li> <li>- 재정 5(변경2)</li> <li>- 소득 및 지출 6(변경3)</li> <li>- 공공행정 및 사법 23(변경15)</li> </ul>	- 기본통계 표준 서식 표준화에 따른 항목 조정